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 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강동구지회 및 그 하부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및 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보조금의 교부·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참조 :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 전화 : 02)3425-7388, FAX : 02)3425-7292, E-mail : tnk10@gangdong.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